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서삼석·박희승·임호선

윤준병 • 양부남 • 송옥주

복기왕 • 이병진 • 박수현

위성곤 • 박지원 • 정준호

문대림 • 정진욱 • 김영진

김문수 • 안도걸 • 조계원

이원택 · 소병훈 · 이개호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.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,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 고 있음.

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216개가 소멸고위험단계로 높아짐.

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확충 및 인구유출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.

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및 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유출하고 있음.

이에 출산 및 보건, 교육,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·도기본계획을 수립 시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나.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·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 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고,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· 군·구에는 응급실·내과·분만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(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신설).
- 다.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·건조·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제7항 신설).
- 라.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, 자녀의 학비지원,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

택 우선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,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제6조제2항제1호 중 "인구이동 변화 등에"를 "인구이동 변화, 출산 권장 등에"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"인구이동 변화 등에"를 "인구이동 변화, 출산 권장 등에"로 한다.

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가는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·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·군·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응급실·내과·분만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시·군·구별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1. 운영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
- 2.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
- 3. 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해운법」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·건조·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8조의2(출산 권장을 위한 지원) 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주 민에게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정기적 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자녀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진학 할 경우 출생 순서 구분 없이 해당 자녀의 학 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후화돤 주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 만큼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「공공 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

수 있다.

- ④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
- 2. 인구소멸지역 등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
- 3. 통학을 위한 조치
- 4.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
- 5.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및 인건비 지원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·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4조,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·도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에 따른 시・군・구	2
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	
시행계획, 제7조에 따른 시·도	
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	
시행계획, 제8조에 따른 국가	
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	
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	
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
	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
	의료계획
제6조(시・군・구 인구감소지역	제6조(시・군・구 인구감소지역
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	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시・군・구기본계획은 다음	2
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	
하여야 한다.	
1.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	1
조,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	인구이동 변화, 출산 권장
사항	<u>등에</u>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
- ③ ~ ⑦ (생 략)
-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(생 략)
 - ② 시·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| ② -----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 여야 한다.
 - 1. 시·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 l. ------한 사항
 - 2. ~ 8. (생 략)
 - ③ ~ ⑦ (생 략)
- ④ (생략)

<신 설>

⑤ (생 략) <신 설>
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(현 행과 같음)

- 구조,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 ----인구이동 변화, 출산 권
 - 2. ~ 8. (현행과 같음)

장 등에-----
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 제23조(의료기반의 확충) ① ~ 제23조(의료기반의 확충) ① ~
 -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국가는 지역별 보건의료 인 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 관할 시·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 -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・군・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응급실 · 내과 · 분 만산부인과・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

제24조(주거・교통기반의 확충) 제24조(주거・교통기반의 확충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료분야에 대해서는 시・군・구 별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 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1. 운영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
- 2.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3. 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지원사항
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 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「해운법」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 박 구입・건조・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8조의2(출산 권장을 위한 지 원) 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

구감소지역 내 주민에게 양육 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 구의 자녀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진학 할 경우 출생 순서 구분 없이 해당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거 주하는 주민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 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 만큼의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「공공주택 특별 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- ④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

- 2. 인구소멸지역 등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자료의 정비
- 3. 통학을 위한 조치
- 4.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확보
- 5.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및 인건비 지원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